

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LS)란?

- ▶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)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(MRL)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국내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

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, 460여종 농약에 대해 약 7,0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

- 쌀(190건), 고추(210건), 사과(151건)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음
- 엽(경)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함(직권 등록 필요)

- ▶ PLS제도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.

1차(2016년 12월 31일 시행)

-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



견과종실류



땅콩 또는 견과류

| 밤, 호두, 은행, 잣, 땅콩, 아몬드, 피칸, 개암, 도토리 등



유지종실류

| 참깨, 해바라씨, 호박씨, 들깨, 올리브, 면실, 유채씨, 홍화씨 등



음료 및 감미종실류

| 커피원두, 카카오원두, 콜라너트, 과라나 등

과일류



열대과일류

| 바나나, 파인애플, 키위(참다래), 아보카도, 파파야, 대추야자, 망고, 구야바, 코코넛, 리치, 패션푸르트, 두리안, 망고스틴 등

2차(2018년 12월 31일 시행예정)

-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

*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15-78호(2015. 10. 29. 기준)

